산업재해 보상보험

01 산업재해보상보험

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(재원)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로,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.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.

※ 공단 홈페이지 - 홍보자료 - 간행물 - 브로슈어 - for foreigners - 2020 English Brochure 참조

(1) 산업재해 기초상식

산재보상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(☎1588-0075)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.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치료(응급 치료)가 중요하며,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. 특히 손가락 등 절단사고가 나면,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.

산재치료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강제로 출국시킬 수 없으며,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또한 산재보험급여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.

(2)신청대상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

(3)서류작성

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가능하면 재해 내용과 일시 등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해야 한다. 만약,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산재보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.

(4)보상절차

재해발생 병원이송 진단서(소견서)발급

최초요양 신청서 작성 공단 제출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

의학적 자문(필요 시) 심의 및 결정 결정사항 통보 (청구인, 사업장, 의료 기관)

(5)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

구분	내용	수급자
요양급여	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 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진료비: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: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: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: 보조기,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	재해자
휴업급여	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,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	재해자

구분	내용	수급자
	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하는 급여	
상병보상연금	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요양 중인 재해자 중 중증요양상태등급 1~3급 해당자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	재해자
장해급여	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 해의 정도(1~14급)에 따라 지급하는 급 여	재해자
간병급여	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	재해자
작업재활급여	산재장해인(1~12급)을 원직장에 복 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(1~12 급)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 당 지급	직장복귀지원 금: 사업주 훈련비용: 직업 훈련기관 훈련수당: 재해 자

구분	내용	수급자
유족급여·장례비	사망 재해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 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에 소요되 는 장례비	유족급여: 유족 장례비: 장례를 지낸 사람(유족 등)

02 기본적인 안전수칙

사고예방의 일차적 조건은 작업장과 주변 통로를 자주 청소하고, 정리정돈을 잘해두는 것이다. 통로의 장해물을 모두 치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,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. 다음은 모든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들이다.

매 작업 시작 전에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조치 후 작업하자.

청소, 수리, 정비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전원을 반드시 끄자.

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,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자.

회전하는 기계에서 작업할 때는 면장갑을 끼지 말자.

안전모,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자.

절단. 연삭. 기계 등 미세먼지나 찌꺼기가 날리는 작업을 할 때는 보안경을 쓰자.

유해물질은 종류별로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구분해서 보관하자.

세척제, 접착제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보호(방독) 마스크를 착용하자.

항상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두자.

구급상자와 소화기 설치 위치를 알아 두자.

금지·경고·지시·안내 등과 같은 안전·보건표지의 메시지를 잘 알아두자.

식사할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자.

03 알아 두어야 할 안전·보건표지

(1) 금지표지



< 출입금지 >



< 보행금지 >



< 차량통행금지 >



< 사용금지 >



< 탑승금지 >



< 금연 >



< 화기금지 >



< 물체이동금지 >

(2) 경고표지







< 인화성물질 경고 > < 산화성물질 경고 > < 폭발성물질 경고 >



< 급성독성물질 경 고 >





< 부식성물질 경고 > < 방사성물질 경고 >



< 고압전기 경고 >



< 매달린 물체 경고



< 낙하물 경고 >



< 고온 경고 >



< 저온 경고 >



< 몸균형 상실 경고



< 레이저광선 경고 >



< 발암성 · 변이원성 ·생식독성·전신독 성 ·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>



< 위험장소 경고 >

(3)지시표지



< 보안경 착용 >



< 방독마스크 착용 > < 방진마스크 착용 >





< 보안면 착용 >



< 안전모 착용 >



< 귀마개 착용 >



< 안전화 착용 >



< 안전장갑 착용 >



< 안전복 착용 >

(4) 안내표지



< 녹십자표시 >



< 응급구호표지 >



< 들것 >



< 세안장치 >



< 비상용 기구 >



< 비상구 >



< 좌측 비상구 >



< 우측 비상구 >

※ 출처: www.kosha.or.kr